

수원지방법원 2023. 4. 28 선고 2023가단244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3. 4. 2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. 11. 18. 접수 제2048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이희승

별지